#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72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김우영·김문수·송재봉

박민규・윤종군・김 윤

이재강 · 김남희 · 최민희

양문석 · 노종면 · 황정아

정동영 · 조인철 · 박해철

채현일 • 박주민 • 이정헌

김 현 · 한민수 · 조계원

김성환 · 이훈기 · 이광희

임미애 의원(25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 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야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

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공사 소속 직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나.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 다.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면직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 마.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바. 이사회의 기능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 제청과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 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 근거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10조의3 신설).
- 아.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사장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 자.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사회가 회의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 (안 제17조 신설).

법률 제 호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9명"을 "13명"으로, "한다"를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에"를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송에"로, "전문성 및"을 "전문성, 지역 및"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 이 경우 대통령은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1. 국회 교섭단체 중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

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 4.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소속 직원이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 5.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전원의 동의로 추천하는 사람 2명
- ⑤ 제3항 각 호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는 자는 이사 추천을 위한 기구의 구성, 공개절차를 통한 이사 후보 모집, 심사 절차, 의견수렴등 이사 추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제4호에 따른 투표의 방식(전자투표 등을 포함한다), 선거인 명부, 투표일정, 투표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회가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 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

-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 던 사람
-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 거나 있었던 사람
-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제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외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 방송공사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이사,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임원 및 진흥회가 최 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 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

다.

- ③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8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 3.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진흥회,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해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개인·법인 및 단체"를 "임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을 제외한 개인, 법인·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사장의 면직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 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이사회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있다.

제10조제10호 중 "추천"을 "임면제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외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 방송공사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이사,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 ① 진흥회 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은 이사회의 제청 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다. 이사회가 사장을 임면제청하는 때에는

-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명제청은 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4(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진흥회 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추천시 청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평가위원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다.

- ⑨ 이사회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장 후보자 공모, 응모자의 주요경력 및 업무수행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 응모자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5(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2. 진흥회의 임원
  -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
  -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0조의6(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후보자 선정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 대상 후보자를 선 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다음 날 까지 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장후보자(이하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해당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는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가

- 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⑤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사회가 제시한 사장 임명제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 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4. 방송 관련 전문성
-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⑥ 평가위원회는 사장 임기만료일 55일 전까지 각 평가대상 사장후 보자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를 대 상으로 면접심사를 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평가위원회가 제출 한 평가점수와 합산한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이 경우 각 후 보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점수를 최종 평가점수의 100분의 7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이사회는 제7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최종 사장후보자로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임명 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⑨ 제7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수의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상 사장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방법 및 효력, 최종 사장후보자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사람
  - 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람
  - 3.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 4.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흥회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진흥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이사 및 사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진흥회 이사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에 따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 제6조(임원) ① -----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 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하다. ② · 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u>방송에</u> 관한 <u>전문성</u> ④ -----<u>제6조의2에 해당하</u>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 서 방송에----전문성, 지역 명한다. <후단 신설> -----다음 각 호에 따라 추 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이 경우 대통령은 제6조의2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 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으면 추천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1. 국회 교섭단체 중 의석 수 <신 설>

<신 설>

<신 <u>설></u>

<신 설>

<u>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u> 명. 이 경우 국회 의결을 거 쳐야 한다.

- 2.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미디어 관련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방송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사람 2명
- 4.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소속 직원이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5.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전원

<신 설>

⑥ (생 략)<신 설>

의 동의로 추천하는 사람 2명
⑤ 제3항 각 호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는 자는 이사 추천을 위한 기구의 구성, 공개절차를 통한 이사 후보 모집, 심사 절차, 의견수렴 등 이사 추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4호에 따른 투표의 방식(전자투표 등을 포함한다), 선거인 명부, 투표일정, 투표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회가 정한다.

- <u>⑦</u>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 다.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 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 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 ·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 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 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6. (생략) <신 설>

- 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 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 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 관의 임 · 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1. ~ 6. (현행과 같음)
-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 외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종합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② (생략)<신설>

이사, 임·직원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 과 신분보장) ① 임원 및 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 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 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 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 자의 사장·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 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8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자격요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 된 경우

- <u>3.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진흥회, 진흥회가 최다출자 자인 방송사업자 또는 그 계 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 송사업자에 대해 회계부정이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 자인 방송사업자의 소관직무 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현행과 같음)

-----. 다만, 제 10조제10호에 따른 사장의 면 직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

- ⑤ (생략)
-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생략)
- 2. 공개하면 <u>개인·법인 및 단</u> <u>체</u>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 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생 략) <u><신 설></u>

방송사업자 및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

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

송사업자의 사장 · 임원을 제

외한 개인, 법인 · 단체-----

- 3. (현행과 같음)
- ⑦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 여야 하고, 회의록은 이사회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기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 1. ~ 9. (생략)
  -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 송사업자의 사장 <u>추천</u>에 관한 사항

<신 설>

<u>11.</u> (생 략)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 7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 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 6. (생 략) <신 설>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1. ~ 9. (현행과 같음)
10
임면제청
11.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1. ~ 6. (현행과 같음)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 외에 한국방송공사.

② (생략)<신설>

<u><신 설></u>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종합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이사, 임·직원으로 재직중이 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 ①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 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 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주주총 회에서 승인한다. 이사회가 사 장을 임면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명제청은 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 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 업자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 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 상 200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평가위원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장하 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 가 최종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⑤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 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u>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u> 활한 운영과 직무 수행을 위하

- 역 행정적·재정적 지원(인건 비 등 운영비용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 8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행정적·재정 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⑨ 이사회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장 후보자 공모, 응모자의 주요경력 및 업무수행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 응모자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5(평가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 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 지 않은 사람
  - 2. 진흥회의 임원
  -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원

-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0조의6(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후보자 선정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다음 날 까지 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장후보자 자(이하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해당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는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 한다.
  - ⑤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

 사회가 제시한 사장 임명제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 공 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4. 방송 관련 전문성
-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⑥ 평가위원회는 사장 임기만 료일 55일 전까지 각 평가대상 사장후보자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점수와합산한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와로 한다. 이 경우 각 후보자에대하여 평가위원회가 제출한평가점수를 최종 평가점수의 100분의 70 이상 반영하여야 한

다.

- ⑧ 이사회는 제7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최종 사장후보자로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임명 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9제4항 본문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⑨ 제7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 수의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후 보자를 결정한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상 사장 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방법 및 효력, 최종 사장후보자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사

<신 설>

람

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람
 3.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
 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회의

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